

「2017년 서북권 비즈니스쇼룸」 기획 운영 과업지시서
2017. 10.

「2017년 서북권 비즈니스쇼룸」 기획 운영
과업지시서

소속 의류산업팀
담당 윤혜진 선임
전화 02-2088-3140
이메일 hyejinlala@seouldesign.or.kr

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
홈페이지 www.seouldesign.or.kr

【 목 차 】

I. 사업안내

1. 사업개요
2. 추진방향
3. 세부 사업내용

II. 계약사항

1. 계약개요
2. 과업내용
3. 과업 준수사항

「2017년 서북권 비즈니스 쇼룸」 기획 운영

I 사업안내

I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「2017년 서북권 비즈니스쇼룸」 기획 운영
- 나. 사업목표 : 서울로7017 공원으로 인해 일감감소로 침체되어 있는 서북권 의류제조산업의 제조기술 홍보, 일감 확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 스스로 일감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함
- 다.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'17년 12월 31일(일요일)까지
- 라. 소요예산 : 일금 사천만원 40,000,000원 VAT 포함(안)
- 마. 사업자 선정 : 전개공개수익계약

II 추진방향

- 가. 사업목적
 -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북권에 비즈니스 쇼룸을 조성해 정보확보 → 일감연계 → 봉제업체 일감확보의 과정을 통해 봉제업체 성장사례 마련
 - 신진 디자이너들이 높은 품질의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고, 연계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봉제업체, 신진디자이너, 창업희망자들의 비즈니스를 서북권으로 유입
- 나. 추진방향
 - 봉제업체와 디자이너가 스스로 일감을 창출할 수 있는 협업,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, 봉제업체 정보확보를 통해 일감연계 프로그램 지원, 향후 서북권에 일감연계 프로그램이 일감감소의 대책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
 - 일감연계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체의 상품을 전시, 홍보하여 더 다양하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

III 세부 사업내용

가. 사업내용

구분	주요내용
서북권 우수품질 봉제업체 일감 연계	-서북권 제작 상품이 필요한 디자이너 정보 확보 -일감이 필요한 우수품질 봉제업체 연계
서북권 의류제조 기술 홍보 서북권 의류상품 판매 (전시홍보)	-서울역 일대 봉제업체만의 기술과 상품 홍보
민관 협력 및 행사 기획	-타 관계기관과의 협력, 연계 -서북권 비즈니스 쇼룸 홍보, 개관식, 플리마켓 개최

나. 세부내용

- 1) 서북권 우수품질 봉제업체 일감 연계
 - 사업목적 : 자체적으로 일감을 찾기 어려운 봉제업체에 제품생산이 필요한 디자이너를 직접 연결하여 새로운 일감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
 - 업체별,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서북권 봉제업체 정보 확보
 -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신진디자이너 정보 확보
 - 서북권 봉제업체의 샘플과 작업내역 데이터화
 - 봉제업체 데이터를 통한 디자이너의 봉제업체 선택
- 2) 서북권 의류제조 기술 홍보 및 서북권 의류상품 판매
 - 사업목적 : 7017서울로 고가공원 개장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난 서울역 일대에 봉제산업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고, 그 안에서 봉제기술과 서북권 의류상품을 홍보하기 위함.
 - 서울역 일대 봉제업체만의 기술을 알릴 수 있는 홍보, 전시
 - 디자이너와 연계하여 제작한 상품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시
- 3) 민관 협력 및 행사 기획
 - 사업목적 :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, 숙명여대 의류학과, 지역봉제협의체 등 서북권 지역의 봉제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의 연계로 지역 단위의 봉제산업 활성화의 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 - 서북권 비즈니스 쇼룸 개관식 기획 및 진행
 - 서북권 봉제업체 제품을 이용한 플리마켓 기획 및 진행
 - 지역 패션 봉제 연계 기관을 활용한 마케팅

II 계약에 관한 사항

I 계약개요

가. 개요

- 계약명 : 「2017년 서북권 비즈니스 쇼룸」 운영 기획
-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.12.31.
- 소요예산 : **일금사천만원정 (40,000,000천원, VAT포함)**

II 과업 내용

가. 서북권 우수품질 봉제업체 일감 연계

- 지원업체
 - 서북권에 위치한 봉제업체
 - 서북권 특화 봉제상품 제작이 필요한 디자이너
*서울디자인재단 타 사업 디자이너 DB활용
- 과업범위
 - 봉제업체, 디자이너 정보 취합
 - 일감 기획 및 연계 운영
 - 운영보고서 제출 (매주, 매월 보고서 제출)
 - 봉제업체 대상 일감연계 상담 추진
 - 연계 업체 정기 네트워킹 프로그램
 - 연계업체 및 디자이너 홍보

나. 서북권 의류제조 기술 홍보 및 서북권 의류상품 판매

- 과업범위
 - 서북권 봉제기술 및 상품 관련 전시
 - 쇼룸 내 봉제상품 전시 프로그램 기획
 - 쇼룸 내 봉제상품 전시, 판매

다. 민관 협력

- 과업범위
 - 관계기관과의 협력, 연계 사업 기획
 - 관련 행사 참여
 - 쇼룸 제품 관련 플리마켓 기획, 운영

라. 주의사항

-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한 자료(사진, 데이터, 그림 등)의 확보(촬영, 구매, 임대, 지급 등)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,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

제안사가 해결함

-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사는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.
-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 일부,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III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

가. 기타 준수사항

구분	내용
홍보	□ 서북권 비즈니스 쇼룸을 위한 홍보 지원
협력	□ 유관기관 협력 유지 및 활용계획 방안제시
안전	□ 운영 기간 및 사업진행 시 안전사고 대비 계획 및 운영 매뉴얼 정립
기타	□ 기타 사업시행 후 만족도 조사 등 개선사항 도출해야 함

나. 사업수행 지침

□ 과업수행 지침

※ 본 과업지시서는 편의상 과업 지시자는 “발주기관”으로, 과업 수행자는 “계약상대자”로 칭한다.
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획 관련 논의한다.
-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.
-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- 과업의 효력
-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

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·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
-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
 - ②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 - ③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
 - ④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
 - ⑤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
 - 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 - ⑦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 - ⑧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⑨ 당초 제안서 제출 시 업체 소개내용, 참여인력 경력, 사업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
 - ⑩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, 재단은 대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,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대행사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진행되며, 재단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다. 착수보고 지침

□ 착수 보고 지침

- 착수보고 시 내용 구체화 및 교육 참가 협력·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.
 -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,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인력투입 및 사업운영 계획을 제시한다.
 - 기획,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 계획 수립
 -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- ##### □ 착수보고 시 업무분장 및 역할 명시
- 사업의 질적, 안정적 관리를 보완 및 통합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추진체계를 수립한다.
 -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 시 재단의 요청에 의한 디자이너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또는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□ 수행 환경

- ① 본 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.
- ② 본 사업은 서울시 서북권지역(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)의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.
- ③ 본 협약서 협약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행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·진행한다.
- ④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제출 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, 협상서,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⑥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⑦ 인쇄 및 홍보 등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진행한다.
- ⑧ 각종 진행과정에서 전문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며, 작업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진행하고, 작업 추진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당사자에게 있다.
- ⑨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한 자료(사진, 데이터, 그림 등)의 확보(촬영, 구매, 임대, 지급 등) 및 제안내용 등의 특허권, 저작권 등이 배타적 권리와 관련 되었을 경우 위탁업체가 해결하며, 본 계약 수행 중에 계약 당사자 간에 발행사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.

라. 기타

- ① 본 협상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.
- ②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, 중간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,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상대상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·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.
- ⑤ 모든 저작권, 소유권은 발주처(서울디자인재단)에게 있다.